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향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군 사 경 찰 의 직 무 수 행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각군 규정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내용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68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률 제2조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있어 직권남용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조)
- 나. 법률 제5조의 군사경찰의 지휘감독과 관련하여 위임 규정을 둠(안 제4조)
- 다.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보고 규정을 둠(안 제5조)
- 라. 법률 제10조의 교통 등 질서유지와 음주단속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법률 제11조, 제15조의 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사용방법 ·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제9조)

바. 법률 제17조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기준과 금액,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기관) 합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0. 0. ~ 0. 0.) 예정

2) 행정규제 : 진행 예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누구든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직무수행에 있어 군사경찰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하게 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군사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군사경찰의 범위와 신분증명) ① 법 제3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단, 병(兵)에 대하여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할 수 있다.

1.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및 그 직할 부대·기관 : 국방부장관
2. 육·해·공군·해병대 : 각군 참모총장

②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제4조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 · 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에 관한 지휘 · 감독을 소속 군사경찰부대 또는 부서의 장으로서 군사경찰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보고) 군사경찰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게 협조한 때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동행요구를 한 때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무기 또는 흉기 조사를 한 때
4.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 또는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법 제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 건물 · 배 또는 차에 출입한 때
6. 법 제18조에 따라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

제6조(교통질서를 위한 조치 및 음주단속·측정 등) ①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사지역에서 교통·운행·항행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원,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차단, 이전,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하기 전에 제3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단속 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한 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정해진 금지된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단속 대상자가 운전,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주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적발결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사경찰은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군사경찰장비 등의 도입 및 관리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장비 등의 관리상태, 교체 및 신규도입 또는 폐기 필요성, 사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란 무기,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고무탄총, 전자충격총,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도입 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 및 기본적인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
2.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검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실시

3.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4. 국방부장관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④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치 : 착용형 촬영·녹화·녹음장치

2. 기구 : 수갑, 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고무탄총, 방패, 헬멧 등 보호장구

제9조(장비 등의 안전교육 및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 장비를 포함하여 신규 장비 등의 도입 및 교체시 안전교육과 안전 검사 기준 등을 수립하고 이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수칙, 사용방법 및 위험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사용방법·관리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국방부장관등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국방부장관등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⑤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⑦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설치 기관 소속 군사경찰 중 영관급 및 장

성급 장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군사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등이 임명한다.

제13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등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임명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관계기관 협조)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사경찰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병인계, 사건이첩,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00000호, 2021.6.00>

이 영은 2021. 6. 23.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사경찰 장비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 기준

1. 군사경찰 장비 안전검사 기준

구 분		검 사 내 용	검 사 빈 도
위해 성장 비	전 자 총 격 기 , 전 자 총 격 총	1. 작동순간 전압 60,000볼트, 실효전류 0.05암페어, 1회 작동시간 30초를 초과하는지 여부 2. 자체결함·기능손상·균열등으로 인한 누전현상 유무	반기 1회
	고 무 탄 총	1.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kg 이상인지 여부 2.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반기 1회
군사 경찰 장구	수 갑	1. 해제하는 경우 톱날의 회전이 자유로운지 여부 및 과도한 힘을 요하는지 여부 2.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모서리 등에 날카로운 부분 이 있는지 여부	반기 1회
	포 승	1. 면사·나이론사 이외의 재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반기 1회
	경 찰 봉, 호신용 경봉	1. 물리적 손상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2. 호신용 경봉은 찢을 때 봉의 말단이 부착되어 있는 지 여부 및 접혀짐·펴짐이 자유로운지 여부	반기 1회
	방 패	1. 균열 등으로 모서리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반기 1회

2. 군사경찰 장비 사용방법·관리 및 안전에 관한 교육 기준

구 분		교 육 내 용	교 육 방 법	교 육 빈 도
위해 성장 비	전 자 총 격 기 , 전 자 총 격 총	사용요건·작동요령 및 안전수칙	실습/토의식 교육	연간 1회
	고 무 탄 총	사용요건·안전수칙· 사격술 및 안전장치작동요령	실습/토의식 교육	연간 1회
군사 경찰 장구	수 갑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	실습/토의식 교육	반기 1회
	포 승	사용요건·포박요령 및 해제방법	실습/토의식 교육	반기 1회
	경 찰 봉, 호신용 경봉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실습/토의식 교육	반기 1회
	방 패	사용요건·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실습/토의식 교육	반기 1회

[별표 2]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11조 제3항 관련)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 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사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하되,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제4호와 같다.

4.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가.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음주·약물사용 적발보고서

No :

결 재	담당	과장	지휘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구 분	적발유형	[] 음주	[] 약물사용
음주 측정	일시	장소	
	방법	[] 호흡측정(측정기기 번호 :)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 (0. %)	
	최종 음주일시	최종 음주장소	
	구강청결제	[] 사용	[] 미사용
	입 행금	[] 행금	[] 미 행금
	감정의뢰	[] 채혈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약물사용 측정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일시	장소	
	방법	[] 소변검사	[] 타액검사 [] 기타()
	결과	[] 양성 (약물종류 :)	[] 음성
	감정의뢰	[] 소변	[] 모발 [] 기타()
피검사자	소속/직책	계급/성명	
	군번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관계자	성명	주소	
	관계	연락처	
참고사항 (측정 시 정황 등 기재)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피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적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신규, □ 추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위 손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내용(적용된 다른 법령)		
	지급일자	지급기관(지급자)	
	지급금액 금 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국방부장관 또는 00참모총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청구인	→ 접수 처리기관 (국방부)	→ 심의·의결 처리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결정서 통보 처리기관 (국방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전부) 승인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제7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국방부장관	직인
-------	----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제7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국방부장관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748-6839